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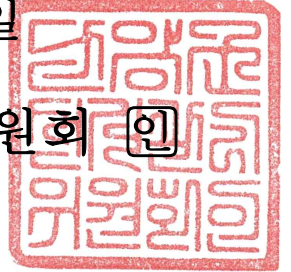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공고 제 2025 - 21호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사무보조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2월 29일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인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계약기간 | 근무지 | 비고 |
|---------------------|--------|--------------------------------|------------|----|
| 행정사무보조직 (절차사무보조) | 4명 | 2026. 1. 26.(월) ~ 6. 19.(금) |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 |

- ※ 계약기간은 선거 실시 상황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 또한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주요업무 : 민원전화 응대, 자료 취합·정리, 선거물품 정리, 각종 선거 절차업무 보조 등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자격

- 최종면접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2008. 1. 15. 이전 출생자)
-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구 분 | 우대사항(서류전형만 해당) |
|---------------------|--|
| 행정사무보조직 (절차사무보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 공통자격 외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우대사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사무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로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 일반행정업무 경험자 및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보조원 등 근무 경험자 |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 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다. 가점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구 분 | 부가 점수 | |
|----------------|---|-----------------------------|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 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3. 채용 절차

| | | | | | | |
|-------------|------------------------|-------------------|-------------------|------------------|-----------------|--------------|
| 채용공고 |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채용 |
| 2025.12.29. | 2025.12.29. ~2026.1.9. | 2026.1.12. ~1.13. | 2026.1.13. 까지 | 2026.1.15. | 2026.1.20. 까지 | 2026.1.26. ~ |

가. 서류전형 방법

| 채용분야 | 내 용 | | | | | | | | | | | | | |
|---|---|-------|-----------|--------|--|----|---------|-------|-----------|-----------|----|----|----|--------|
| 행정사무보조직 (절차사무보조) | ○ 적극적 서류전형(선발예정인원 2배수 선발)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계</th> <th colspan="3">평가점수</th> <th rowspan="2">가점</th> </tr> <tr> <th>응시분야 경력</th> <th>자기소개서</th> <th>우대사항(자격증)</th> </tr> </thead> <tbody> <tr> <td>100점 + 가점</td> <td>50</td> <td>35</td> <td>15</td> <td>3 ~ 13</td> </tr> </tbody> </table> | 계 | 평가점수 | | | 가점 | 응시분야 경력 | 자기소개서 | 우대사항(자격증) | 100점 + 가점 | 50 | 35 | 15 | 3 ~ 13 |
| | 계 | | 평가점수 | | | | 가점 | | | | | | | |
| 응시분야 경력 | | 자기소개서 | 우대사항(자격증) | | | | | | | | | | | |
| 100점 + 가점 | 50 | 35 | 15 | 3 ~ 13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026. 1. 13.(화)까지 | | | | | | | | | | | | | | |

나. 면접전형 방법

| 채용분야 | 내 용 |
|-----------------------------|--|
| 행정사무 보조직 (절차사무 보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채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

다.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운영기한) | 비고 |
|---------------------|-------|-------------------------------|----|
| 행정사무보조직 (절차사무보조) | 4명 | 8명 이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선거일까지) | |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 가점, 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면접전형 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서류로 갈음 가능)
 - ※ 채용권자는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선거일까지 (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4. 전형일정

| 구 분 | 세부일정 | 비 고 |
|-----------|--------------------------------------|---------------------|
| 모집 홍보·안내 | 2025. 12. 29.(월) ~ 2026. 1. 9.(금) | 위원회 홈페이지 5일 이상 공고 |
| 지원서 접수 | | 방문·등기우편·전자우편 접수 |
| 서류 심사 | 2026. 1. 12.(월) ~ 1. 13.(화) | |
| 면접 대상자 통지 | 2026. 1. 13.(화) |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 면접 심사 | 2026. 1. 15.(목) |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 20.(화)까지 |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 채용예정일 | 2026. 1. 26.(월) | 근무 개시 |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원서접수기간 : 2025. 12. 29.(월) ~ 2026. 1. 9.(금) 18:00까지

나. 원서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 주소: **(27013)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길 6-9,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 **zeroda@nec.go.kr**

다. 응시자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제출서류 |
|------------|---|
| 원서접수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붙임】서식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
| 면접전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지참 • 법정 가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가점비율 필수 기재) • 사회형평 가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 우대사항 관련 서류 또는 자격증 사본(해당자) |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면접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근무조건 등

| 채용분야 | 계약기간 | 근무지 | 근무시간 | 보 수 |
|---------------------|--------------------------------|----------------|--|---|
| 행정사무보조직 (절차사무보조) | 2026. 1. 26.(월) ~ 6. 19.(금) | 단양군선거 관리위원회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 근무 가능 | 1일당 90,830원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별도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7. 유의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 관련

- 반환청구기간 : 2026. 1. 26.(월) ~ 2. 25.(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나.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제3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다.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 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응시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 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회에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회에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 [2026. 1. 9.(금) 18시] 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면접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043-421-1390)

- 별지
1. 선거사무보조원 응시원서(서식) 1부.
 2. 자기소개서(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1부.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1부.